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산광역시 이전기관·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41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부산광역시 이전기관 ·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3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27.

다.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산광역시 이전기관·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u>부산광역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신설</u>

현행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u>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u>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또한,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¹⁾.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

따라서 개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이에 개정안은 2026.6.5. 시행 예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라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법에 따른 ‘이전기관’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을, ‘이전기업’은 해운업, 항만건설·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함²⁾.

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참고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및 입주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⁵⁾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2. “이전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나. 해운업, 항만건설·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3)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4)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15호

5)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방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개정안은 이전기관·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감면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의 집적에 따른 기능 고도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특례 목적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특례 인정의 효과성) 이전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서 임차료 등 경비가 예산을 통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기관의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감면함으로써 불필요한 임차료 지출 등을 방지하고 정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행정적·재정적 사항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특례요건의 명확성·구체성)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유재산특례의 대상을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으로 규정하고, 목적도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임.

(존속기한의 적절성)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⁶⁾을 고려할 때 존속기한도 적절하다고 보임.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특례의 명확성과 보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6)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별표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한다)에 매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은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u><신 설></u>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2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1. 12. 31.

문 의 처

02)6788-5160